

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- 0303호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/IEC 17011에 의거 「KOLAS 국방(방산)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(KOLAS-SR-024,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-196호, 2016.07.04.)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4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 「KOLAS 국방(방산)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개정 고시

### 1. 개정이유

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# 2. 개정내용

- 가. 인용 행정규칙명 개정사항 및 표준 개정사항 반영 (안 1.1, 2. 등)
- 나. 평가사의 무기체계개발 사업관리 경력 요건 삭제 (안 6.1)
- 다. 평가사 교육이수 요건 축소 (안 6.4)
- 라.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(안 9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